

의안번호	제 401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7월 일 (제 282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9년 7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401
----------	-----

제출연월일 : 2009년 7월 7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자치단체의 명칭, 관할구역 및 구역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 국회 행안위 - 961(2009.7.2)호와 관련,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

2. 의견수렴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함
- 관할구역 :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연기군 잔여지역
- 구역변경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따른 충청북도, 충청남도, 공주시, 청원군, 연기군의 구역변경 내용

3. 행정안전부 공문 사본 1부 : 붙임

4. 충청북도의회 의견 서식 : 붙임

5. 참고 자료 : 붙임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지방의회 의견 제출 요청

1. 귀 자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행안위-961(2009.7.2)호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자치단체의 명칭, 관할구역 및 구역변경에 대하여 관련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함에 따라
3. 귀 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견수렴 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청원군수, 공주시장, 연기군수, 충청북도의회회장, 충청남도의회회장, 청원군의회회장, 공주시의회회장, 연기군의회회장

행정사무관 서기관 자치제도과장 전결 07/03

협조자

시행 자치제도과-1757 (2009. 07. 03.) 접수 균형정책과-3696 (2009. 07. 03.)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767 전송 02-2100- / jblueseas@mopas.go.kr / 대국민공개



행정안전위원회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
(경유)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등에 관한 의견수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에 룹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수렴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함.
- ② 관할구역 :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연기군 잔여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p>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당곡리·저산리 일원,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화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p>
--

③ 구역변경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따른 충청남도, 충청북도, 공주시, 청원군, 연기군의 구역변경 내용

<중전 충청남도 공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 등에서 제외되는 지역>

중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중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당곡리·저산리 일원,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운곡리·공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중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중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운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지방자치단체 폐지로 인하여 중전 충청남도에서 제외되는 지역	중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나. 의견수렴 대상 관계 지방의회

- 충청남도의회, 충청북도의회, 공주시의회, 연기군의회, 청원군의회

※ 참고사항

○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제2호(시·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끝

행정안전위원회

수신자



행정주사보 김용수

입법조사관

7526SK 수석전문위원

Yongsoo

위원장

발조자

시행 행안위 - 961

(2009. 7. 2)

접수

(2009. .)

우 150-70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행정안전위원회

/ http://adminhom.assembly.go.kr

전화 02-788-2834

전송 02-788-3355

/ usewater76@na.go.kr

/ 공개

충청북도의회 의견

1. 근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자치단체의 명칭, 관할구역 및 구역변경에 대하여 관련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함(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1757호)

2. 의견수렴 사항

- 대상 자치단체 : 충청북도,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 의견제출 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함
- ② 관할구역 :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연기군 잔여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당곡리·저산리 일원,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 ③ 구역변경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따른 충청북도, 충청남도, 공주시, 청원군, 연기군의 구역변경 내용

<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 등에서 제외되는 지역 >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당곡리·저산리 일원,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지방자치단체 폐지로 인하여 종전 충청남도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3. 제출서식 : 붙임

※ 조속한 시일내 제출 요구함에 따라 긴급현안으로 처리 요망

<붙임 1>

충청북도의회 의견 제출 서식

충청북도의회 의견서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함
<의견>

2. 관할구역 :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연기군 잔여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당곡리·저산리 일원,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의견>

3. 구역변경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따른 충청남도, 충청북도, 공주시, 청원군 연기군의 구역변경 내용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 등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당곡리·저산리 일원,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지방자치단체 폐지로 인하여 종전 충청남도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의견>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장 (인)

참고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조 (관계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개정 2005.4.27>

□ 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